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 화 75-7834

제 636 호

1978. 1.30.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5-5444

대 리 보 시 보

지 원	공보부장	문화공보관	공 람
	정	정	정

차 례

◎ 조 례

제 1217 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개정조례..... 3

제 1218 호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 17

◎ 규 칙

제 1735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17

◎ 고 시

제 2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8

제 2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9

제 2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24

제 2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25

◎ 공 고

제 19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25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1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26
제 22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26
제 23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27
제 24 호 :	환지예정지일부변경 및 지정공고.....	27

◎ 사 령

.....

.....

.....

.....

.....

.....

.....

.....

.....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1월 3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17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
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개장일 및 개장시간) 서울특
별시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의 정기휴
업일 및 개장일의 개장시간은 아
래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농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
도매인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정 기 휴 업 일	개 장 시 간	
청 과 부 류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축 산 부 류	매월 2째, 4째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 산 부 류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제 3 조 (수수료 및 사용료) ① 지정 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 상장 수수료, 중매인이 물품매수자		로부터 받는 중매수수료, 서울특별 시 소유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 료는 아래표와 같다.	
구 분	위탁상장수수료	중 매 수 수 료	도매시장사용료
청 과 부 류	1000분의 60	1000분의 30	1000분의 5
수 산 부 류	1000분의 60	1000분의 30	1000분의 5
축 산 부 류	1000분의 25	1000분의 10	1000분의 5

(별지 제 1 호 서식)

중 매 인 허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 일	
신 청 인	본 적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생년 월일	
	참가도매 시 장 명				
	거 래 품 목				
서울특별시			부 (류)		년 월 일
도매시장 지정도매인 경우			지 정 도매인 인 (법인명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신원증명원 1 통 2. 이력서 1 통 (법인인 경우 임원 이력서) 3. 등기부 등본 및 임원 명부 (법인에 한함) 4. 신청당시 대차대조표 (법인에 한함)					

(별지 제 2호서식)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참가도매시장명					
	거래품목					
1. 신고사항		개업, 휴업, 재개업 주소, 성명, 상호 변경 신고				
2. 신고내역		년 월 일	변경	개업, 휴업, 재개업 성명 주소 상호		
서울특별시 부류			년 월 일			
도매시장 지정도매인 경유			지정도매인 법인명 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시장			귀 하			

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지정도매인과 기타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장 시설의 신축, 증축, 철거하거나 그 형태를 크게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지정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망, 해산, 폐업, 업무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장의 관리책임 및 처분제한) ①지정도매인은 법령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도매시장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은 그 개설허가가 취소 (이전 또는 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 10 조 (시설사용의 규제)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 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조례에 위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 11 조 (대금결제) ①지정도매인이 위탁 매매대금의 결제 기한후 15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서울특별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가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 13 조 (신고) ①지정도매인은 소속 중매인이 제 4 조 제 2 항 제 3 호 내지 제 8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매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정도매인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매업무를 개시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이를 재개한 때

2.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

제 14 조 (영업보고, 감독) ①지정도매인은 소속중매인의 월별 거래실적을 매분기마다 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도매인이 법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 서식에 의한 자기계산매매보고서를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보고서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지정도매인, 중매인, 경매사, 매매참가인, 부속영업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시행규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 및 거래품목과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상장수수료수입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출하차 및 중매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중매업의 허가 및 취소)

①도매시장에서 중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중매인 허가신청서를 지정도매인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지정도매인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중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매업의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나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1 월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휴업한 경우

3. 각 부류별 월간 거래금액이 계속하여 3 월이상 200 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한 때

5.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의 출하 업무를 대행한 때

6.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도매시장 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수탁 또는 중개한 때

7. 중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써 중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8.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제 5 조 (경매사 임면 및 매매참가인 등록) ①지정도매인이 경매사를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법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경매사 승인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 24조 및 법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참가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매매참
가인 등록신청서 및 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 4호 및 별지
제 4-1호서식에 의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매참가인에게 교
부하는 매매참가인 등록증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다.

제 6 조 (도매시장 관계인의 영업 제
한 등) ①지정도매인의 총발행주
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와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안에서 본인 또는 그 배
우자, 동거가족, 동업자의 명의로
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②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
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
매를 수탁하거나 도매시장에서 이
를 거래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중매인은 중매업무가 허가된 시
장 및 장소외에서 도매시장 거래

물품을 중매 또는 판매하거나 도
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
위를 하지 못한다.

제 7 조 (시설의 용도 지정 등) ①
지정도매인, 중매인 및 부속영업인
이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타 사용조건은 서
울특별시장이 지정도매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
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한다.

②도매시장안에는 지정도매인의 임
원 및 종업원과 거래관계자를 위
한 음식점, 이용소, 약국 및 도매
시장 운영상 직접 필요한 부대업
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 8 조 (시설의 전대금지, 시설반환
등) ①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매시
장 시설을 사용하여 지정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없이 전대하거

(별지 제 3 호 서식)

경매사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3 일

지정도매인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주소		
	주소					
경매사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경매사를 임명하고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5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지 정 도 매 인 법인명 대표자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원증명원 2. 경력증명원 3.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제 2 호 규정의 경매사 교육 과정 이수 4. 신체 검사서 5. 사진 2 매						

(별지 제 4호 서식)

매매참가인등록신청서

신 청 인	본 적					
	주 소					
	상 호					
	대표자명 또는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인	참 가 시 장 명	서울특별시 부 도매시장				
	사업등록번호	제 호				
	거래가공조리 또는구입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 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5 조 제 2 항 규정에 의거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 사업등록 사본 1통

(별지 제 5 호 서식)

매 매 참 가 인 등 록 증

주 소					
상 호					
대표자명 또는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생년 월일	
참가시장명					
거래가공조리 또는구입품목					
사업등록번호					
등록일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매매 참가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함.

இ
ய
த

서울특별시장 (인)

변경등록시에도 같음

100mm X 870mm

(별지 제 6 호 서식)

중매인영업보고서

도매시장명					
지정도매인 법인명	대표자				
거래내용					
	거래품목별	거래량	거래액	수수료 수수액(원)	소속중매인수
상(1-10) 순					
중(11-20) 순					
하(21-말) 순					
합 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14 조 제 1 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부도매시장

지정도매인

법인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장귀하

(별지 제 7 호 서식)

자 기 제 산 매 매 보 고 서

도 매 시 장 명						
지정도매인법인명 대 표 자 명						
일 자	19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출 하 자	판매상대자	이 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14 조 제 2 항 규정에
의거 자기 제산으로 매매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정도매인 법인명 대표자명

(인)

서울특별시 장

귀 하

(별지 제 8 호 서식)

정 가 또는 수 의 매 매 보 고 서

도매 시장 명													
지정도매인법인명 대표자명													
일	자	19 . . .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출	하	자	판	매	자
매 매 사 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14 조 제 2 항 규정에 의거 정가 매매 또는 수의 매매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정도매인 법인명 대표자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78년 1월 30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218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시세과세 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30평 이하"를 "25평(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하고 동조 동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제2호중 "15평 이하"를 "13평(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하며

제2조 제3호중 "영업세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건축)으로 영업자 등록을 필하고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교부받은 건설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자(당해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민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

를 면제한다.

부칙 제2항중 제1호중 "1977년"을 "1978년"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저용 전일 현재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하였거나 과세 면제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중전의 예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 조례 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78년 1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35 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감면) 제1항1호중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무능력자로서 결핵환자에 한함)

라. 병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 6 조 (감면) 제 1 항 2 호중 "가"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요구호 대상자 증명 소지자는 전체 진료비의 50% 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단, 저소득자로서 결핵환자에 한함.)

제 11 조 (고가액)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보임니다.

1978. 1.28

서울특별시 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변경	대로	1	12	35M	11,250M	홍은동네거리	신도면효자리	대 1-12사점 부근인 홍은동 52, 221번지 일대가각정리
기정 변경	대로	2	6	30	2,600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원남동 149번지 일대가각정리
기정 변경	"	"	29	30	"	중 2-109	광장 81	반포동 307번지 일대가각정리
기정 변경	중로	1	63	20	2,250	이문동 255	석판동 247	회기동 99번지 일대가각정리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 2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8 호 (77. 12.29) 로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허가 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동시행령 제 26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조 (77. 3. 17)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78. 1.3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개포동
457 의 72 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수도 전기
공업 고등학교 신축 건설

다. 사업의 규모 (면적) : 29,985 평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영 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착공 : 1978.2.1

준공 : 1 차 : 1978.9.30

2 차 : 1979.9.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주소성명 (별첨)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서

< 강남구 개포동 >

권 리 자		권리내용	지 번	지 목	비 고
주 소	성 명				
도곡동 193	최 영 차	가 등 기	485	전	
행당동 37-79	나 공 성	•	488	•	
	김 분 순	•	480	•	
종로1가 36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40	•	

○ 지상물에 관한 이해 관계인 조서

영 년 작 물 조 서

<강남구>

지 번	수 종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산 97-2	배 나무	720	개포동 497	석 종 명	
산 109	•	47	• 807	이 종 서	
457	•	232	• 503	석 종 삼	
산 105-1	복숭아	212	• 504	석 후	
476	배 나무	407	• 499	석 옥 환	

분 묘 조 서

지 번	지 목	구 분	기 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산 96-1	임	단 장	5	흑석동 29-79	조 진 삼	
487	전	•	1	개포동 495	석 태 환	
산 101	임	•	7	금호동 1가 1475	이 성 범	
산 97-2	•	•	2	개포동 497	석 종 명	
산 102-3	•	•	5	용두동 236-57	김 경 수	
산 109	•	•	1	개포동 807	이 종 서	
산 105-1	•	•	7	• 504	석 후 균	
산 87	•	•	8	필운동 184-3	이 보 령	

○ 임야전필지조서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강 남 구 개 포 동	산 97-1	임	4 호			미 등 기
	산 98	•	3	개포동 503	석 종 필	
	산 102-1	•	33	이촌동 298-9	이 근 우	
	산 102-2	•	33	•	•	
	산 104	•	6	천호동 412	김 태 성	
	산 106-3	•	7	광주시 충정로 3가26	윤 은 중	
	산 106-2	•	7	청파동1가 1-48	윤 필 중	
•	산 106-1	•	24	오류동 13-82	이 형 찬	

○ 토지전필지조서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강 남 구 개 포 동	417	전	523	녹번동 55-3	민 중 현	
	472	•	485	신당동 43-12	김 무 정	
	419	•	132	개포동 500	석 종 학	
	467	답	327	역삼동 63	임 현 익	
	466-1	•	613	개포동 518	석 귀 복	
	466-2	•	378	신림동 104	김용필 외6인	
	466-3	전	170	갈현동 517-18	이 동 백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강개남포구동	446-4	답	605	효자동 102-2	안 종 훈	
	465	"	619	역삼동 63	임 현 익	
	464	"	362	" "	"	
	463	"	404	개포동 500	석 광 원	
	462	"	1523	" 521	김 창 호	
	461	"	566	" 504	진 영 득	
	460	"	717	을지로3가 259-7	강 민 택	
	458	"	240	개포동 497	조 영 현	
	459	"	730	신당동 291-24	조 창 환	
	485	전	407	개포동 500	조 윤 홍	
	484	답	788	" "	석 광 원	
	483	전	42	" "	"	
	487	"	425	" 495	석 태 완	
	488	"	572	삼선동4가 249	이 건 명	
	491	"	1184	구로동 317-60	조 윤 진	
	490	"	366	개포동 500	석 성 학	
	489	"	431	용문동 1-63	석 진 우	
	486	"	624	" "	"	
	450	답	322	개포동 497	조 경 술	
	451	전	476	" "	"	
	453	"	34	" 666	마 영 수	
	455	"	35	" "	"	
	456	"	95	" "	"	
	457	"	612	" 503	석 종 삼	
	454	"	155	신사동 196	이 명 복	

○ 임야매입지조서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강남구 개포동	산 86-3	임	1816㎡	화곡동 105-495	송이춘 외 1인	
	산 87	·	315	필운동 184-3	이 보 령	
	산 88	·	480	군자동 324	김 성 기	
	산 93	·	694	궁정동 72	배 종 근	
	산 96-1	·	2644	흑석동 29-79	조 진 실	
	산 97-2	·	5672	개포동 503	석 종 필	
	산 99-1	·	113	시흥군신동면양리318-27	허 종	
	산 101	·	1190	금호동1가 1475	이 성 범	
	산 102-4	·	321	실길동 8212	주 경 성	
	산 102-3	·	2281	용두동 236-57	김 병 수	
	산 103	·	140	청담동 23-2	합돈선외1인	
	산 105-1	·	5869	개포동 504	석 후 균외1인	
	산 106-4	·	595	동소문동 1가 90	김 도 천	
	산 109	·	400	개포동 807	이 종 석	
	산 107	·	947	효제동 138	강 신 한	

○ 토지 매입지 조서

토 지 조 서

(개포동)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강남구 개포동	473	전	569㎡	북아현동 553	교 진 영	
	474-1	·	21	돈암동 2-30	권 혁 소	
	474-2	·	3	북아현동 344	이 상 점	
	476	·	2429	개포동 499	석 옥 환	
	479-1	·	421	· 521	김 경 수	
	479-2	·	1627	하월곡동 84-25	공창군외1인	
	480	·	80	개포동 517	석 진 세	
	481	답	371	· 495	석 종 해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개포동	482	전	560	개포동 495	석태완	
"	492	"	1373	" 512	석종래	
"	448	"	66	" 742-2	석중서	
"	449	답	578	신사동 196	이명복	
"	436-2	"	83	개포동 499	석옥환	
"	468	"	1950	동선동1가 123	이지호	
"	436-1	"	44	신사동 196	이명복	
"	470	전	1190	개포동 503	진기용	
"	452	"	3187	" 504	석후균	
◎서울특별시고시제 2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5 호 (77. 5.19)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영수자에 대해서는 이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8. 1.3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신문로 - 종합청사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문로 - 종합청사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구조 : B = 15 M B = 6 M L = 687 M L = 156.5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7.12.20 ~ 78.2.28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2 호 (77. 8.29)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1. 3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 (도로)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중로	1	163	20 미터	300 미터	강남구 천호 동 로타리	동부종합시장 로타리	

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9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추가, 시흥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서류 송달은 별도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할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 공고로서 같음 합니다.

1978. 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신림, 신림추가, 시흥 토지 구획정리 사업.
2. 변경내역 :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영등포구 독산동 일부 토지
3. 변경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제 21 호

환지계획 변경공람 공고

1. 영동제1 지구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 (아파트지구) 중 일부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사항은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8 . 1

서울특별시 장

<환지계획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1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나. 변경위치 : 강남구 반포동 309 의
1 호외 21 필지

다. 변경면적 : 10,979.1 평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 호

환지계획 변경공람 공고

1. 영동제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서초동 산186 번지의 환지에정지에 대하여는 중복되어 환지에정지가 지정되었음이 발견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 (취소)코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8. 1.

서울특별시 장

- 환지계획 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동제1 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

나. 변경위치 : 강남구 서초동
산 186 번지

다. 변경면적 : 4,480.6 평

◎서울특별시 공고 제 23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

1. 암사,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있어,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2. 변경내용 조서 및 도면은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류를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8. 1. 31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 호

환지에정지일부변경및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9(77.12.28) 호로 공람

공고하고 공람기간 종료되었기 환지계획 변경공고 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에정지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조서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8. 1.

서울특별시 장

1. 사업명 :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내역 : 강서구 신철동 일부토지
3. 변경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홀에 비치)

사 령

◎ 1978.1.26

상 정 과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춘

동력자원부 진출을 명함.

◎ 1978.1.31

주택건설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선 병 순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